

---

# 2020 민관예산협의회 회의운영 결과보고서

---

2020. 7.

(주)신에스에이글로벌

# 2020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결과 보고

## I

## 사업 개요

### 1. 사업명 : 2020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운영

### 2. 사업목적

- 서울시 예산사업의 제안·심사·선정 등 예산편성 과정 등에 시민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·민주성 증대 및 참여민주주의 활성화

### 3. 사업 개요

- 법적근거 :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- 기 능 : 시민(단체) 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등
- 구 성 : 제안된 사업의 소관기관 기준으로 구분된 분야별로 구성
  - 분 야 : 10개 분야(여성·교육, 경제·일자리, 복지·행정, 교통, 문화체육관광, 환경, 도시안전, 주택·재생, 공원, 협치)
    - ※ 협치분야는 서울시 '서울협치담당관'에서 별도 운영
  - 위원수 : 총 270명(분야별 27명)
    - 분야별 참여예산위원 20명, 민간전문가 3명, 사업부서 공무원 4명
    - 분야별 회장 1명(호선), 간사 2명(위원인 민간간사 1명, 사업부서 공무원간사 1명)
- 운영장소 : 서울시청 본관 등 회의실 및 외부 회의실
- 주요 운영내용
  - 2020년 시민(단체) 제안사업 사전 검토회의, 적격심사, 제안자 사업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(결과보고회), 사업 1차 선정, 사업내용 숙의·심사, 사업 2차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

#### 4. 사업수행기간 : 2020. 4월 ~ 7월

#### 5. 사업범위

- 회의 운영인력 투입·관리에 관한 사항
- 회의실 운영에 관한 사항
-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사전 준비
-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당일 진행에 관한 사항
-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
#### 6. 세부추진내용

##### 민관예산협의회 구성

- 분야(9개) : 여성·교육, 경제·일자리, 복지·행정, 교통, 문화체육관광, 환경, 도시안전, 주택·재생, 공원

##### 공원분야 소분과위원회 운영

- 추진배경  
공원분야 제안사업의 경우, 심사해야 할 사업수가 많아 제한된 일정내에서 위원전원이 동시에 사업을 검토하는데 무리가 있고 심사의 효율성이 낮아 민관예산협의회 공원 분야에 소위원회 구성·운영 방안 검토 필요
- 추진방향  
공원분야 소관부서·사업수 기준으로 2개 분야로 구분해 각 소분과위원회를 구성, 분야별 사업단위로 심사 후 전체 회의를 다시 개최해 최종의견 결정
- 소분과위원회 운영

소분과구분	제안사업 소관부서
공원 제1소분과위원회	공원녹지정책과, 자연생태과
공원 제2소분과위원회	조경과, 공원조성과, 산지방재과, 한강사업본부, 서울식물원 공원녹지사업소 (동부·중부·서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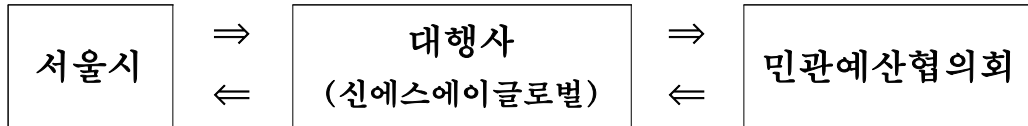
- 운영시기

제안자 사업설명청취 단계부터 사업심사 종료 시까지 진행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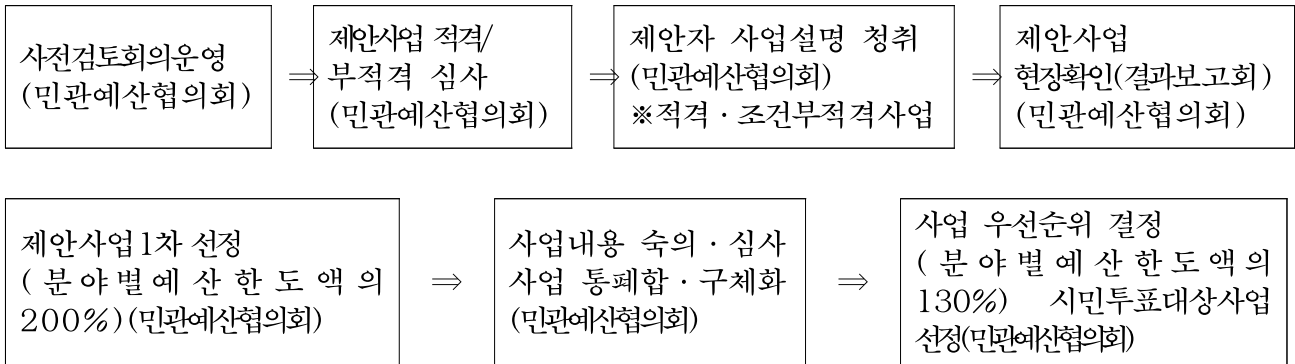
**사업 추진 현황**

1. 사업운영체제



구분	주요역할
서울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정 내부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, 참여예산관리시스템 활용이 수반되는 업무</li> <li>○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회의 중 중요회의 참석(적격심사, 1차 사업 선정, 제1차 숙의·심사,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 등)</li> </ul>
대행사 (신에스에이 글로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의 진행 및 관리</li> <li>○ 회의실 관리운영</li> <li>○ 회의 진행요원 관리</li> <li>○ 회의 결과 취합 및 제출</li> <li>○ 회의 시 필요한 자료 작성 및 발송</li> </ul>
민관예산협의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안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</li> <li>○ 사업제안자 의견청취</li> <li>○ 제안사업 현장확인</li> <li>○ 사업심사 시 통폐합 및 구체화 필요 사업 논의</li> <li>○ 1차 사업 선정(분야별 한도액의 200% 범위 내)</li> <li>○ 사업 숙의 심사</li> <li>○ 2차 사업 선정(분야별 한도액의 130% 범위 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</li> </ul> </li> </ul>

## 2. 사업추진절차



## 3. 단계별 추진내용

### ○ 사전 검토회의

- 시민(단체) 제안사업 내용에 대해 위원들이 깊이 있는 사전검토할 수 있는 기간
- 심사기준·역할 설명 및 심사자료 사전 배부해 본격적인 사업심사 전 심사 시 유의사항, 제안사업 관련 정보 등 습득

### ○ 제안사업 적격 / 부적격 심사

- 시 사업부서에서 적격 및 부적격으로 분류한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

### ○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

- 적격(조건부 적격 포함) 분류된 사업에 한하여 제안자로부터 사업목적,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청취
- 민관예산협의회 위원들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 현장확인 실시
- 위원별 현장확인 보고서 작성 후 현장확인보고회 개최

### ○ 제안사업 1차 선정 : 분야별 사업예산 한도액의 200% 사업 선정

- 사업제안서, 시민의견, 사업부서 실무보고서, 현장확인 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필요성, 공공성, 효과성, 사회적 포용성 등을 위원별 평가 후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00억원 기준 200%인 600억원으로 분야별 적격 사업수 및 사업비 비율로 배분

#### ○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

- 민관예산협의회(숙의예산시민회), 사업부서등이 참여하여 숙의 실시
- 토론을 통한 사업 보완·발전 후(구체화, 유사사업 통폐합 등) 위원별로 사업필요성, 공공성, 효과성, 사회적 포용성 등에 관한 평가표에 따라 2차 평가

#### ○ 사업 우선순위결정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선정

분야별 위원의 평가결과를 합산, 고득점 순으로 우선사업 결정 후 시민투표대상사업 상정

- 총 한도액은 사업예산 300억원 기준 130%인 390억원
- 시 사업 중에서 통폐합 구체화 후에도, 수혜범위가 1개 구로 제한적인 사업은 시민 투표 대상사업에서 배제
  - 서울시 직접 수행사업(예 : 한강, 서울숲 등 관련사업)이나 시범사업은 가능
  - ※ 지방자치법 시사무 규정 :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
  - 참여예산제 조례 규정 :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,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

#### ○ 시민투표대상사업 수를 감안하여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수렴 후 결정

### 4. 회의 운영인력 관리

#### ○ 회의 진행요원 투입계획 수립·실행(총괄관리자 1명 포함 각 분야별 1명)

- 총 10명, 사전교육 및 관리

#### ○ 개요

- 인원 : 총괄 1명, 연구원 5명, 보조연구원 4명으로 구성.
- 회의분야(9개분야) : 여성·교육, 경제·일자리, 복지·행정, 교통, 문화체육관광, 환경, 도시안전, 주택·재생, 공원
- 담당 연구원 선정(각 분야별 1명) : 회의운영 및 관리

#### ○ 기본방향

- 우수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
-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관리 및 전문성 확보
- 전문성 및 효율성이 강화된 인력 운영
-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,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
- 인력운영의 효율화 달성